

제310회 임시회  
2012. 5. 18.(금)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5. 18.(금)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12년 4월 30일
- 다. 회부일자 : 2012년 5월 2일
- 라. 상정일자 : 2012년 5월 11일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경용)

###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0700호, 2011.5.2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2> 개정 에 따라 기능10급 계급 체계를 일반직과 동일한 9계급 체계로 개편(시행 : 2012. 5. 24)
- 이에 따른 기능10급 폐지를 위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기능직공무원 정원책정 기준 조정(별표)

- 10급 폐지, 9급 비율 상향 조정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 재	1%이내	7%이내	22%이내	22%이내	30%이내	18%이상
조 정	1%이내	7%이내	22%이내	22%이내	48%이상	
증 감	-	-	-	-	18%	△18%

##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연병호)

금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4조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을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부칙에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2012년 5월 24일부터 우리도도 지방공무원법에 맞추어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을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현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는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이 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로 되어 있으며, 기능9급은 30%이내, 기능10급은 18%이상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기능9급과 기능10급을 합하여 기능9급의 정원을 48%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비 율	7%이내	21%이내	35%이내	35%이내	2%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이내	7%이내	22%이내	22%이내	48%이상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6%이내	84%이상	26%이내	74%이상

4.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이내	3%이내	6%이내	8%이내	14%이내	31%이내	37%이상

5.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5%이내	24%이내	44%이내	15%이내	10%이내	2%이상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①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②~④ (생략)

부칙 <법률 제10700호, 201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제41조, 제63조제2항제4호, 제64조제8호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② (생략)

③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 1급부터 기능 9급까지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2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2항·제3항, 별표2, 별표 3 및 부칙제3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